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는 국세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준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2. 13. ~ 03. 24.)

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(채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) 영 제14조의5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10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제17조의5(채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) 영 제14조의5에 따라 채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회수금액”이라 한다)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.	제17조의5(채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) 영 제14조의5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10조를 준용한다.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징수금액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탁 수수료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만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만원 +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2만원 +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32만원 +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억원 초과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 332만원</td></tr> </table>	징수금액	위탁 수수료	100만원 이하	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	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	10만원 +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	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82만원 +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532만원 +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	5억원 초과	1천 332만원	
징수금액	위탁 수수료												
100만원 이하	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
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	10만원 +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
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82만원 +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532만원 +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
5억원 초과	1천 332만원												
<부 칙>	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